

【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】

1. 보험의 종류

특종 - 상해/상해보험

2. 보험종목의 명칭

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

3. 보험의 목적

- (1) 피보험자의 신체
- (2) 법률상의 배상책임
- (3)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
- (4) 동산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
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(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(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.

보험기간	보험료납입주기
1년	일시납, 12회납
3년	일시납, 36회납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6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(1) 판매채널 : 범용(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)
- (2) 가입연령 : 18세 ~ 75세
※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.
- (3)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의 경우 주택으로만 쓰이는 아래의 물건 내 수용가재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- '아파트'로서 각 호(실)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. 여기서 '아파트'란 주

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.

- (4) 재산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아래의 부보장추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부가한다.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급배수설비누출위험부보장추가 특별약관- 건물에부착된유리위험부보장추가 특별약관- 건물위험부보장추가 특별약관 |
|---|

- (5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- ②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하다.
- ③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,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하다.
- ④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,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하다.

- (6)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.